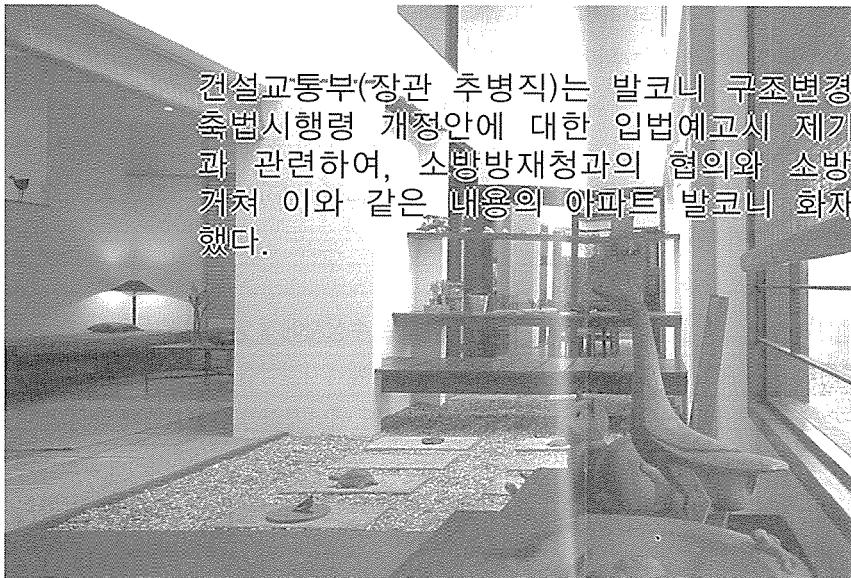


발코니 화재안전 기준 대폭 강화 발코니 대피공간 설치 의무화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는 발코니 구조변경 허용을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서 제기된 화재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과의 협의와 소방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아파트 발코니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건교부는 신축아파트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부분 발코니에 내화구조로 별도 구획된 $2m^2$ ($2m \times 1m$) 이상의 '대피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염차단을 위해 90cm 높이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피공간'은 화재등으로 현관방향의 주된 피난로가 막혔을 경우 인접세대를 통해 이웃한 계단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간으로, 대피공간에는 방벽등을 위해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방화문이 설치되고 안전을 위한 난간과 개폐가능한 창호가 설

치된다.

신축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인접세대 경계부분 발코니에 최소 $3m^2$ 의 '대피공간'을 공용으로 설치하고,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발코니가 포함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기존 아파트로서 새롭게 구조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간 경계벽이 내력벽으로 구획되어 있어 철거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세대가 피난할 수 있도록 최소 $2m^2$ 의 대피공간을 발코니에 마련해야 한다. 바닥판 두께를 포함한 높이 90cm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동식 자동화재탐지기

기존 아파트가 새롭게 구조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간 경계벽이 내력벽으로 구획되어 있어 철거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세대가 피는 할 수 있도록 최소 2m의 대피공간을 발코니에 마련해야 한다.

를 설치하고 발코니 바닥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존아파트를 구조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자체장의 행위허가를 거쳐야 한다.

이미 구조변경된 기존 아파트의 경우,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장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법화 된다.

이는 발코니 구조변경의 합법화에 따른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지자체의 행정지도를 통해 이러한 안전기준이 보강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 신축 중이거나 입주전인 기존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지장체장에게 설계변경신고를 하고 구조변경을 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입법진행할 계획이지만, 입법과정에서 소방관련 전문가의 시험결과등 방재관련 연구보완자료가 추가 제출되면 이를 계속 검토하여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는 건축위원회의 방재분야 심의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앞으로 소방방재청 및 소방관련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답으로 알아보자!

1. '대피공간'은 모든 아파트 • 모든 세대에 설치하여야 하나?

대피공간은 모든 아파트의 인접세대간 발코니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설치목적이 2방향 피난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단식 아파트에서 피난계단을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인접세대간 또는 복도에 양방향 계단이 설치되어 2방향 피난이 가능한 일부 복도식 아파트에는 설치할 필요는 없다.

2. 방화판과 방화유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아파트 미관이 저해되지 않는지?

준공전에는 사업자가 입주자 의견을 조정하고, 준공후에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관리규약등의 방법으로 방화판 및 방화유리 중 하나의 차단시설을 지정하여 운영 가능할 것이다.

3. 발코니 샷시에 사용하는 재료에는 제한이 없나?

발코니 샷시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나, 방화유리부분에는 난연재료 이상의 불연성 자재 사용해야 하는데 KS 시험방법에 따라 난연3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료라면 불연성 자재로서 사용이 가능하다.